

발간등록번호
11-1150200-000039-01

www.youth.go.kr
청소년 2005-42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최창욱(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이용교(광주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최금해(한국청소년개발원·위촉연구원)

2005. 12. 23

청 소 년 위 원 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목 차

I.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경과

1. 계획 수립배경/ 3
2. 추진 경과/ 4

II. 청소년인권 실태 및 정책 현황

1. 청소년인권 실태/ 9
2.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정책 현황/ 12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14

III. 청소년인권 정책 과제

1. 청소년인권정책의 목표/ 19
2. 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 20
3. 청소년인권 주요 정책 과제/ 22
4. 청소년인권 세부정책과제/23

부록 : 청소년 인권정책 실현을 위한 로드맵(2006~2010)

I.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경과

I.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경과

1. 계획 수립배경

- 청소년인권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 확대와 청소년인권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 증대
 - 청소년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세계 청소년의 해’ 시행(1985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활동 프로그램’ 결의안 채택(1995년) 등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일련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3년도의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수립으로 이어졌고, 2005년 ‘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정책이 청소년위원회의 4대 핵심추진과제로 주목받기에 이르렀음.
 -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권리 신장 기반을 마련하였음.
 -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이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여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소년인권정책의 총괄·조정과 종합적인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역할 증대
 -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 정책은 정책 의도나 대상, 내용 등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달리해 왔으며, 부처 간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총괄·조정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소년위원회는 인권 정책에서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청소년인권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향후 청소년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일치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추진 경과

- 초안 마련(2005. 8~11)
 - 청소년 인권 현황 분석
 - 청소년 인권정책에 관한 외국 사례 분석
 - 영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등
 - 델파이조사 : 청소년인권 관련부처 공무원, 교수, 단체전문가 등 30명
 - 전문가 자문
- 워크숍 개최(2005. 11. 8)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및 단체종사자 의견 수렴

- 공청회 실시(2005. 12. 6)
- 청소년, 청소년 인권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계획 검토 및 수정(2005. 12. 13~14)

Ⅱ. 청소년인권 실태 및 정책 현황

II. 청소년인권 실태 및 정책 현황

1. 청소년인권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 모두 학교에서의 인권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관계자가 청소년 인권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인권문제 사안별 심각성(2005년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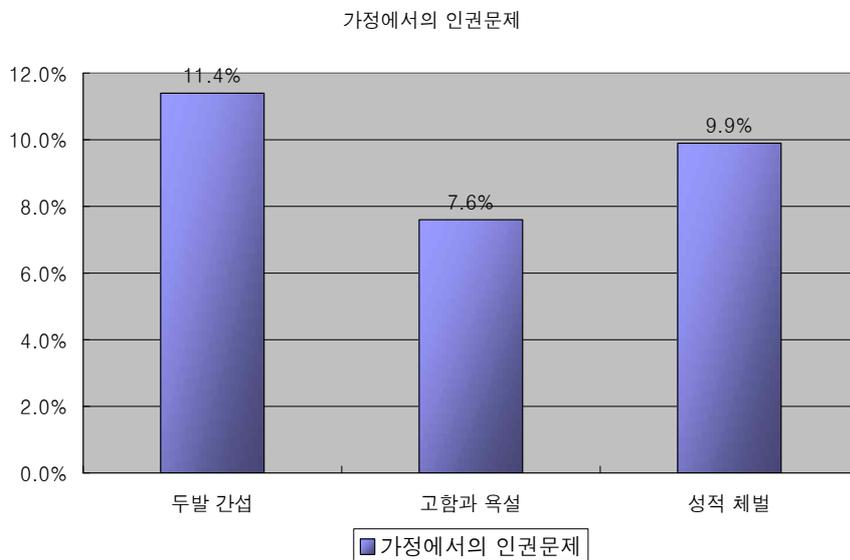
구 분	일반인	전문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에 의한 집단 따돌림	72.5	91.1	96.0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료·선후배의 폭력	63.6	86.7	87.1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50.8	88.9	94.1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	49.1	81.1	89.1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	41.3	80.0	86.1
학교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	35.8	60.0	87.1
일부 잘못으로 모든 학생이 처벌받는 단체 기합	30.3	57.8	72.3
학교에서 남자·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23.6	50.0	77.2
정규교과목 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자유 제한	23.5	68.9	86.1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의한 체벌	20.2	58.9	78.2
학생회 등 학생들에 의한 자치권 제한	19.9	51.1	80.2
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17.7	56.7	81.2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체벌	12.9	53.3	63.4

※ 일반인 1,263명, 전문가 90명, 인권·시민단체관계자 101명.

- 일반인의 경우에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72.5%), 폭력(63.6%), 장애로 인한 차별(50.8%),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49.1%),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41.3%) 등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91.1%), 폭력(86.7%),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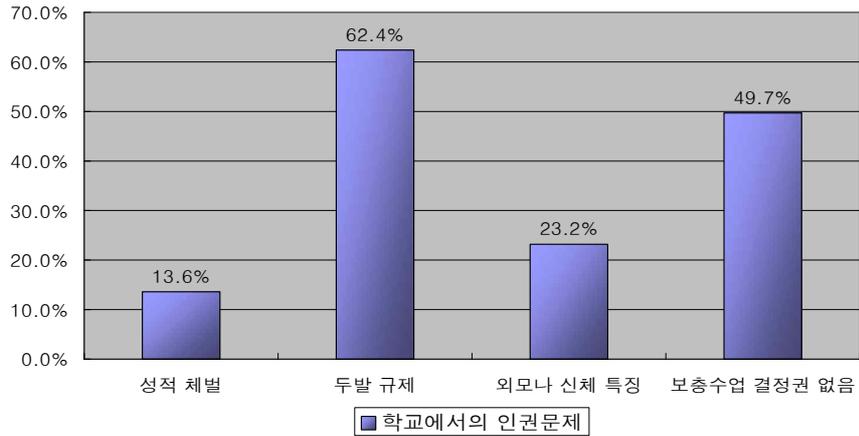
로 인한 차별(88.9%),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81.1%),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80.0%) 등으로 나타남.

-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체벌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고 있음.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지나친 간섭, 고함이나 욕설 등의 폭언, 체벌 등이 행해지고 있음(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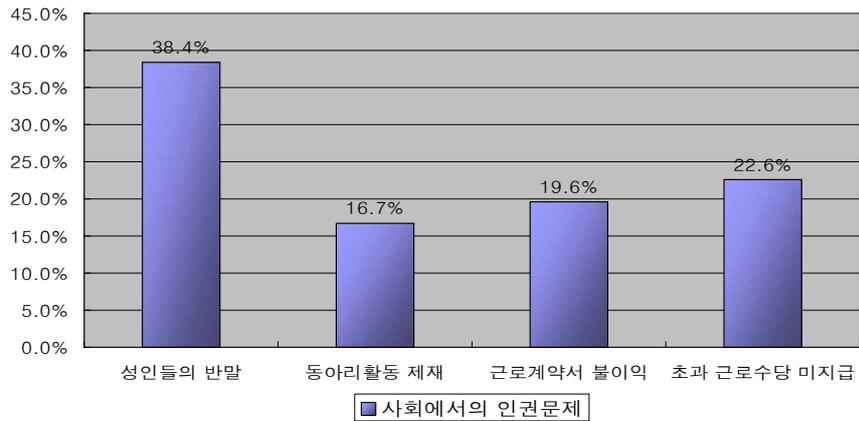
- 학교에서 성적, 두발 규제, 외모나 신체특징으로 인한 차별, 0교시나 야간 자율학습 등과 같은 보충수업으로 인한 인권문제 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

학교에서의 인권문제



-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무시, 동아리활동과 아르바이트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

사회에서의 인권문제



2.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정책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정책은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참여·인권 증진을 4대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인권폭력대책팀, 참여개발팀, 청소년성보호팀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모니터링 기구로서 인권관련 정책·법령·관행·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 학생들의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안전관리팀에서 아동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아동관련 법령,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의 보호, 아동 관련 국제협력, 아동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노동부에서는 평등정책기획팀에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근로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법무부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인권계획의 수립, 인권 관련 법제도, 국내외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권과와 소년 보호 및 보호소년과 관련한 인권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 제1과, 소년 제2과가 있음.

청소년인권정책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 업무
청소년위원회	인권폭력대책팀	· 청소년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 근로·장애·탈북청소년 권익보호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백서 발간
	참여개발팀	·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옴부즈틴의 구성·운영
	청소년성보호팀	·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 청소년관련 국가기구의 정책이나 법령 등의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상담센터	·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개별 진정 상담·접수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개별 진정 조사 또는 관련 기관 권고
	교육협력국	· 인권교육·홍보·관련 국내외기관과 협조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 교육정책과	· 학교생활규정 제정, 학생인권 관련 정책 수립 · 학생권익 보호, 학생인권의 사회기여 등 · 학생인권침해(복장, 두발, 자치회활동 등) 사안 처리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 아동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아동 권익 증진, 관련 법령,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팀	·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 아동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노동부	평등정책기획팀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 근로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법무부	인권과	·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 간의 협력 ·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 시행
	소년제1과	·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년보호행정 관련 법령입안 및 제도 조사·연구 ·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년제2과	·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 기타 처우 · 교과교육소년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 직업훈련소년원의 직업전문학교과정 운영 ·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했는데,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수립, 관련계획의 수립과 예산 배분·중액, 정부기구·시설 설립과 민간협력·감독, 통계자료의 수집, 교육·홍보 등 5가지 영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구분	권 고 사 항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관련 법령에 협약의 4대 일반원칙 적절히 통합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 시행 및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법령 개정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의무 강제조치 및 국가 기금 설립 제도 마련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민법, 군사법원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조항 개정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차별이 금지되도록 관련법령과 학교운영규칙 개정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포르노그래피와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화 •아동 학대와 방임, 성착취 사건의 아동 친화적 기소제도 수립 및 소년사법에 있어서 협약 및 국제기준 이행과 변호사 접촉을 보장, 신체박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검사의 재량권 폐지
관련계획 의 수립과 예산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 •아동을 위해 쓰인 국가 예산 규모와 비율 확인 •아동보호육성계획의 범위 확대 •취학전 교육 및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계획 수립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 우선 배정 •보건예산 증액
정부기구·시설 설립과 민간협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대상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상설기구 설치 •협약 이행을 점검할 정부내 상설기구 설치 •협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부문과 체계적으로 협력 •민간단체의 등록·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감독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전문가나 소위원회 설립 •그룹홈을 확장하고, 전국적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의료기관 설립
통계자료 의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미만 전체 아동에 관한 통계수집 제도 마련 •아동학대·방임의 가해·피해자에 대한 통계수집 체계마련 •아동 성착취에 관한 통계 수집 •아동권리지표 개발 완료 •장애아동의 실태 및 수요 조사 실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권리, 차별 근절, 장애아동에 관한 캠페인 실시 •아동관련 전문가, 아동 학대·방임·성착취 관련공무원, 소년사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에이즈, 성병, 흡연, 약물 등 아동보건에 관한 연구, 아동 학대·방임, 성착취 피해아동의 치료·재통합 프로그램, 법률 정보, 예방조치 등 개발 •제2차 국가보고서 및 서면질의답변서 공개, 보고서 및 심의기록,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출판·배포 •차별 근절을 위한 공공교육 실시, 아동 견해 존중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장애아동 통합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교육의 수준 향상, 경쟁 감소, 여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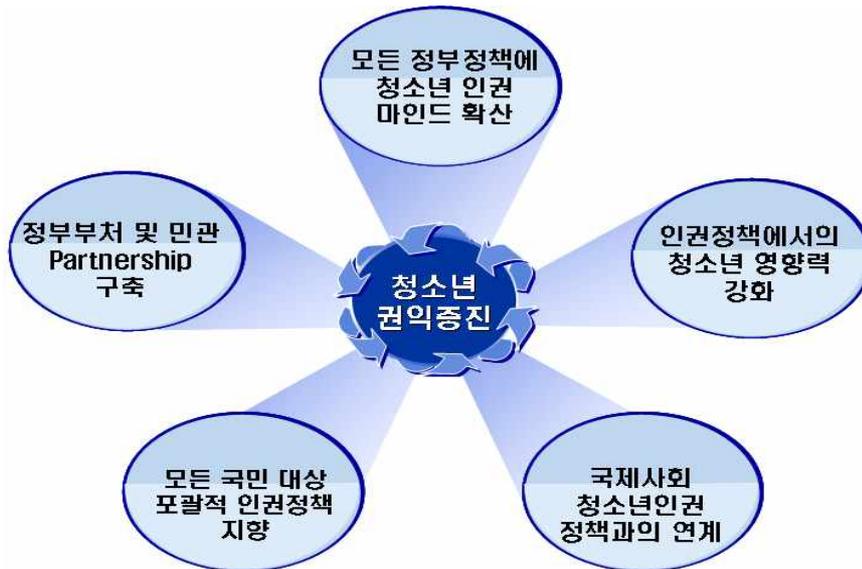
Ⅲ. 청소년인권 정책 과제

Ⅲ. 청소년인권 정책 과제

1. 청소년인권정책의 목표

모든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서의 권익 증진

- 청소년인권정책은 예외 없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해야 함.
- 즉, 청소년 인권정책은 청소년의 성별이나 신분, 언어, 능력, 재산, 인종, 민족, 종교, 출신, 의견이나 신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최상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



[청소년인권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

-
- 모든 정부 정책에 청소년인권 마인드의 확산
 - 정부부처 및 민·관 상호 간 파트너십 구축
 - 인권정책에서의 청소년 영향력 강화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인권정책 지향
 - UN 등 국제사회 인권정책과의 연계 형성
-

- 모든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인권 마인드에 기초해야 함.
- 청소년인권정책은 특정 부처나 부서에 한정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항상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의미함.
- 따라서 청소년인권 정신에 기초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인권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민·관 상호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청소년인권정책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각 부처별로 독자적인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청소년인권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또한 정부부처의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함.
- 청소년인권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함.

- 청소년인권정책은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함.
 - 인권정책에의 참여 과정 자체가 인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청소년인권이 보다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청소년과 성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지향해야 함.
 - 청소년인권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교사, 지도자,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등 모든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외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의 모든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야 함.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청소년, 중퇴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빈곤청소년, 장애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인권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UN 등 국제사회 인권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형성해야 함.
 - 청소년인권은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각 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인권 정책에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 필요함.

3. 청소년인권 주요 정책 과제

-
-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
 - 청소년인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청소년의 자발적인 인권참여활동 지원
 - 인권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인권 단체 및 지도자 지원
 - 청소년인권 법·제도 개선
-

■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

청소년인권에 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인권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청소년정책사업 수행 시 청소년인권 영향평가의 의무화, 관련 부처 간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인권지표의 개발 및 조사, 모니터링 상설기구의 설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함.

■ **청소년인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모든 국민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교육함.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청소년인권 및 정책 사례 등의 소개와 인권자료의 개발,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함.

■ **청소년의 자발적인 인권참여활동 지원**

청소년들을 인권의 주체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인권페스티벌,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권익보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 **인권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인권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과 가정을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함.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미진학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 이주자 자녀, 장애청소년, 여성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도모함.

■ **청소년인권 단체 및 지도자 지원**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 및 지도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중앙 및 지방단위의 단체 지원과 관련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함.

■ **청소년인권 법·제도 개선**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법·제도·정책을 개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청소년인권에 관한 국내 관련법의 개정 및 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등을 시행함.

4. 청소년인권 세부정책과제

1)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

현황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청소년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협약 이행의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의 정부 내 설치와 적극적인 점검, 그리고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수집 제도 마련과 아동권리지표 개발 등을 권고하고 있음.
-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권한과 역할을 갖는 기구로 보기 어렵고, 사무국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화 될 우려가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조정하여 조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독립적인 중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에 1981년에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지원하는 공적 제3자 기관으로서 옴부즈퍼슨제도가 설치되었으며, 스웨덴에서는 1973년에 NGO가 이 제도를 설치하였으나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더불어 1993년에 국가의 공적 제도로 바뀐 바 있음.
- 프랑스에서는 2000년 법 개정으로 아동옴부즈퍼슨제도를 도입하여 아동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개별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해결하고, 아동에게 집단적으로 역기능을 하는 것을 찾아내어 기존 법이나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추진하며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추진 방향

- 청소년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사업 수행 시 청소년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함.
-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인권지표 개발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청소년위원회 내 인권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대회를 매년 개최함.

핵심추진과제

- ① 청소년 정책사업 수행 시 청소년인권 영향평가 의무화
- ② 청소년인권 관련 부처 간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강화
- ③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상설기구 설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 ④ 인권지표 개발 및 정기적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⑤ 청소년위원회 내 인권정책 담당부서의 설치 또는 조정
- ⑥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대회 개최

- ① 청소년 정책사업 수행 시 청소년인권 영향평가 의무화
 -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정책사업 수행 과정 속에서 오히려 청소년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많음.
 - 대규모 국책개발 사업이나 환경관련 정책사업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듯이 청소년인권 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각 청소년사업 수행 시 적용한다면 모든 청소년정책 사업들이 청소년인권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청소년인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부터 청소년인권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 됨. 평가도구는 점진적으로 개발하되 일단 초기평가는 인권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임.
- ② 청소년인권 관련 부처 간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강화
 -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연계하고, 관계부처 간 정책혼선 및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정책 관계부처협의회를 운영함.

- 청소년인권정책 관계부처 협의회는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에 인권 의제를 상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③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상설기구 설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 국제협약과 청소년 인권정책 프로그램 모니터링 상설기구 설치·운영 및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노력을 촉진함.
 - 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 청소년참여를 제도화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인권현황과 사회적 노력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 UN은 행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만큼 이 평가과정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세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국가가 10년 동안 행동프로그램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니터 할 수 있는 도구로 「청소년정책 평가 매뉴얼」(Making Commitments Matter: a Toolkit for young people to evaluate national youth policy)을 개발·배포함.
- ④ 인권지표 개발 및 정기적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현재 한국 청소년의 인권상황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비교적 발전되어 있고, 참여권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의 일상생활 공간인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의 참여권이 매우 낮음. 따라서 인권센터 등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학생, 교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에 관한 조사는 산발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청소년인권정책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청소년 인권상황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인권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영역을 구분하여 3차년 또는 5차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⑤ 청소년위원회 내 인권정책 담당부서의 설치 또는 조정
- 청소년인권 관련 사업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청소년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내에 청소년인권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부서들 간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⑥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대회 개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글로벌 스탠더드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해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함.
 - 정부와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대회 개최를 통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함.

2) 청소년인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및 학부모 등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
 - 2003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의 경우에 19.3%, 청소년지도자의 경우에는 45.8%로 낮으며, 권리 인식도 청소년의 69.6%, 청소년지도자의 74.9%가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인권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 각종 홍보 브로셔의 제작과 인권정책 홍보 웹페이지인 ‘아동정책 홍보’ (Infostelle kinderpolitik)의 운영, 연방 청소년가족부 후원으로 동부 각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카라반(Caraban) 인권축제, 그리고 아동 스스로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 조항을 선택하는 아동권리 투표(children's rights ballots)의 실시, 동요대회, 어린이 영화제, 해변 마라톤, 홍보대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모든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의사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을 명시하고 협약에 대한 직원교육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약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추진 방향

-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확대가 필요함. 특히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권고사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함
- 청소년 눈높이의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와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인권상황과 개선실태 등을 담은 인권백서와 사례집 발간·보급, 인권문화행사·프로그램 및 각종 대중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함

핵심추진과제

- ① 청소년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② 청소년 인권체험교실 등 인권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 ③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④ 정기적인 인권백서의 발간 및 보급
 - ⑤ 청소년 인권신장 모범 및 침해사례집 발간
 - ⑥ 청소년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
- ① 청소년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의 인권의식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홍보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하고 보급함
 - 인권범주별, 대상별, 수준별로 다양한 자료 개발
 - 일반책자 형태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 CD-Rom, 게임프로그램 등 각종 시청각 자료와 영상매체 개발 통한 청소년 접근성을 높임

② 청소년 인권체험교실 등 인권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과 청소년 또래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 청소년인권이 청소년의 생활세계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과 청소년 또래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함. 자신의 인권을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인권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재제공, 강의와 같은 수동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인권캠프의 운영, 인권관련 활동을 통한 학습 등을 다양하게 실행하여 인권의 생활화
- 청소년인권 체험교실 운영
 -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인권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참여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권체험 교실 운영
 - 수련활동 중 1-2시간의 단위 활동이나 2박 3일 일정의 캠프형 프로그램, 그리고 3-4개월 정도의 연속형 인권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③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국민들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 정책의 변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 필요함
-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인 협약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
- 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함

④ 정기적인 인권백서의 발간 및 보급

- 청소년의 인권수준과 개선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청소년 인권백서 발간보급을 통해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함

- 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 통계자료와 각종 현황자료를 수록·배포하여 청소년 관계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
-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⑤ 청소년 인권신장 모범 및 침해사례집 발간

-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인권신장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소개함
-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와 해결노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침해 극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 청소년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인권신장에 기여한 모범적 인물과 단체에 ‘청소년인권대상(Youth Rights Award)’ 또는 ‘청소년인권지킴이 대상(Youth Rights Ombuspersion Award)’ 수여

⑥ 청소년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캠페인과 문화행사·프로그램을 실시함
 - 청소년인권영화제, 청소년인권연극제, 청소년인권 백일장, 청소년인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함
 - 청소년 인권주간 선포 및 행사 개최(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청소년인권선언 제정·선포, 인권지킴이 발대식), 인권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 청소년 인권주체의 대중매체 프로그램과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
 - 청소년인권 관련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드라마, 토론프로그램 등), TV 공익광고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청소년권리 신문·잡지를 발간함
 - 인터넷과 모바일과 연계한 인권캠페인과 행사를 실시함

3) 청소년의 자발적인 인권참여활동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의 필요성 증대
 - 1998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청소년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채택된 리스본선언에서는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 정에서의 청소년참여를 논의한 바 있음
 - 세계 많은 국가에서도 선거, 국회, 지방의회, 정상회담, 포럼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음
-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현재 청소년 참여 수단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미흡한 측면이 많으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추진 방향

-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참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참여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사회 청소년인권 신장활동에의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함
- 청소년 옴부즈탄과 청소년 인권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신장 활동을 제도화하며, 청소년 눈높이의 인권자료 발간과 문화행사 개최, 사이버공간의 권익증진활동 등 자발적 인권·참여활동을 활성화함

핵심추진과제

- ① 청소년 ombudsman 운영 활성화
- ②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도입
- ③ 청소년이 만드는 인권보고서 및 아동권리협약 제작·배포
- ④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권익보호활동 지원
- ⑤ 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⑥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 ① 청소년 ombudsman 운영 활성화
 - 청소년이 스스로 학교, 가정, 사회 등 청소년 생활환경 속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조사하여, 조정 권고하는 ombudsman 운영 활성화
 -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모니터링 기능 강화
 - 청소년 ombudsman 교육 및 홍보활동 활성화
 - 실질적인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전문가와 인권전문단체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 발굴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시스템 마련
- ②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도입
 - 청소년 인권문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사회 유명인을 청소년인권 홍보대사로 임명
 - 청소년인권 홍보대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로 공개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
 - 대중매체의 공식 홍보를 담당하며 청소년인권 관련 국내외 공식회의의 대표로 활동

③ 청소년이 만드는 인권보고서 및 아동권리협약 제작·배포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지원
-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및 프로젝트 공모, 워크숍 등을 통해 청소년 인권보고서 작성
- 인권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교사,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청소년 스스로 인권실태에 대한 해결방안과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개발·제안함
- 청소년인권보고서 작업 결과를 가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회기전 실무회의와 본회의에 청소년 대표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소년이 풀어쓰는 ‘아동권리협약’ 제작·배포
- 청소년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풀어쓰는 ‘아동권리협약’ 제작·배포. 애니메이션, 그림, 청소년문학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분야를 포괄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쓴 아동권리협약의 다양한 공모전을 시행함
- 공모전 등을 통해 작성된 아동권리협약을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와 발간물, 기타 공공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 대중매체의 시리즈 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조항을 홍보함

④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권익보호활동 지원

- ‘청소년인권 신문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청소년의 권리 관련 자료 제공
-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등을 제시함
-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청소년의 언어와 그림으로 사이트를 제작함
-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함
- 인권 관련 법률지원단 및 전문가문위원 구성·운영함

⑤ 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일년에 1-2회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청소년 인권신장 방안을 모색하는 페스티벌 개최
- 전국단위 페스티벌과 지역단위 소규모 인권페스티벌 개최
- 매년 주요 인권주제를 설정하여 페스티벌 모토와 프로그램에 반영
 -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노동권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연극이나 단막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거나, 침해 사례와 이를 구제하는 과정을 다룬 애니메이션 제작·상영, 청소년과 어른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역할연기 등을 함

⑥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 유엔 등 국제기구는 국제적 수준으로 청소년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활동성과를 국제적인 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단에 청소년대표로 참여시킴
 - 유엔 ‘청소년대표자(Youth Representatives)’ 프로그램 도입 및 유엔 새천년개발계획(MDGs)에 청소년참여 활성화
 - 유엔청소년포럼 및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의 국제회의에 청소년참여 활성화

4) 인권 사각 지대의 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현황 및 필요성

- 세계 각국에서는 난민아동, 불법 노동착취아동, 아동 매매 등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인권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난민 국가의 아동들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난민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불법이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추방위기에 있는 숨어사는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에게도 일반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똑같은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음
 - 노르웨이에서는 난민아동과 소수민족아동의 사회 정착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 개정과 임시피난처 마련 등 기구 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집단 및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인권에 소홀히 해왔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최근 이들의 인권문제 심화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이 외국 어린이, 특히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고, 불법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국 아동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장애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빈곤 및 저소득층 청소년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추진방향

- 청소년 중에서도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미진학·근로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 이주자 자녀, 장애청소년, 여성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 및 환경 개선
- 특히, 가출 및 비행청소년의 경우 발달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청소년을 위해서는 장애청소년문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여성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청소년 인권전담 민간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핵심추진과제

- ① 미진학·근로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 ②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 ③ 탈북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 ④ 외국인 이주자 자녀 인권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환경개선
- ⑤ 장애청소년 지원
- ⑥ 여성청소년 인권전담 민간단체 설치·운영

- ① 미진학 근로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인 미진학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연소근로자 인권보호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 미진학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근로내용이 대부분 불법하거나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필요한 일이므로 우선 건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미진학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사회나 국가 기관이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단체나 공공단체도 이에 협력하도록 유도함.
- 지역사회 단위의 비영리, 사회복지, 봉사성의 직종 개발 및 구인·구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②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가출 및 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별로 실시되지 않고, 일부 치료적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의 적극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치료적 접근보다는 발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보다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가출 및 비행청소년들이 자기 개발과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투어와 같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유네스코 등 관련 단체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문화 콘텐츠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제공 및 체험기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음.

③ 탈북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응 지원방안과 환경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함.
- 보호자 없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적응시설 설치와 탈북청소년만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함.

④ 외국인 이주자 자녀 인권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환경개선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권고의견에서 이주자 자녀 등 모든 외국인 아동이 국민인 아동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음.
- 가칭 ‘외국인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국인 이주자 자녀가 부모의 신분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학교교육이 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성장과정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민족, 출신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함.

⑤ 장애청소년 지원

- 장애청소년 문제를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이 느끼는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정책과정에서 장애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대표, 장애별 청소년 대표,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장애청소년 정책에 대한 감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장애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토대로 폭넓게 장애 청소년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청소년 정책의 예산집행에 관해 감사권을 부여함.
-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편의시설의 관리 및 유지가 부실한 곳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청소년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부여함.

⑥ 여성청소년 인권전담 민간단체 설치·운영

- 지금까지 여성청소년의 인권은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함. 청소년집단은 여성집단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주류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므로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여성분야와 적극적인 연대화 협력이 필요함.

- 성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운동과 연령차별 철폐를 위한 청소년 운동을 결합해 이중적 차별 속에 있는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전담할 민간단체를 창설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집중으로 지원함.
- 한편 여성청소년 중에서도 미진학 여성청소년의 경우에 취업하고자 해도 남성청소년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매매로 쉽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각종 복지업무와 같이 여성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우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

5) 청소년인권 단체 및 지도자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인권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와 비정부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경우에 청소년 권리의식 및 시민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매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내 청소년인권단체의 활동 여건이 취약함
 -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청소년전문 인권단체는 1990년 후반에 들어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추진 방향

- 청소년인권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단위에는 중앙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단위에는 지방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함.

- 청소년인권 전문가 및 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력풀을 구성하며, 이들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을 제도화함.
- 청소년인권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청소년인권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족인력과 자원에 대한 보완을 도모함.

핵심추진과제

- ① 중앙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 ② 지방 청소년인권센터 설치
- ③ 청소년인권활동 사례 발표대회 개최
- ④ 청소년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성
- ⑤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⑥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제도화 및 시스템 구축

- ① 중앙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 국가가 청소년인권에 관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에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해야 함.
 - 중앙청소년인권센터는 한국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지역단위에서 인권상담을 실천하는 지역청소년인권센터를 보다 조직적으로 지원하며, 청소년인권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과 양성과정의 운영, 그리고 청소년인권에 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함.
- ②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방청소년인권센터 설치
 - 현재 각 지역에서 청소년단체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청소년인권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인권옹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시·도청소년상담센터, 시·군·구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기존 인력만으로는 부족함.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고 국고보조금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임.

③ 청소년인권활동 사례 발표대회 개최

- 청소년인권활동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한 우리의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경험의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은 향후 인권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동 전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 매년 청소년인권활동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인권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활동가 상호간에 경험을 공유하며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례 발표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표 청소년인권단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함. 사례 발표대회의 우수 결과들은 책자나 홍보용 자료로 제작하여 전국의 관련 시설(학교,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함.

④ 청소년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성

- 청소년인권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사회복지사, 법집행자 등 청소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청소년인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함.
- 많은 교사들이 권위주의적인 교육환경 때문에 자신도 잘 모르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경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다룰 수 있음. 따라서 교사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다루고, 교사연수에 인권교육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청소년인권 정책 영역별로 청소년인권 행정, 청소년인권 연구, 청소년인권 현장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인력으로 활용함.
 - 청소년인권 정책 전문가인력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행정분야: 청소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청소년인권 관련 공무원
 - 연구분야: 청소년인권을 전공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청소년관련학관 교수, 기타 전문영역별 교수 및 학자
 - 현장분야: 청소년인권 시설과 단체, 청소년인권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의 전문가
 - 기타: 언론계, 법조계, 경찰, 의료계 인사들
 - 대표적인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에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이 기관은 전문가 정보의 유지·관리 및 대국민·대청소년 연결기능 수행. 나아가서는 청소년인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인권 전문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도 필요함.
- ⑤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인권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족인력과 자원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는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 네트워크 구축과정은 첫째, 기초연구, 사례분석, 시범적용을 통한 지역단위 청소년인권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함. 둘째, 단계적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1단계: 주도집단 중심의 기본구조 형성, 2단계: 주도집단 중심의 연계축진, 3단계: 연합회 및 협의회 구성). 셋째,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의 질적 강화 등임.

-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소속 기관간의 청소년인권 관련 공동프로젝트 추진, 주도지단에 코디네이팅 센터 운영, 기관 간 역할분담 및 기관·단체장의 협력 유도 등을 추진함.

⑥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제도화 및 시스템 구축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청소년의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고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관련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권교육 전문연수 및 연수기관 지정 등을 통한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함.
- 청소년지도자대상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관련 지도자 집단(청소년지도자, 교사, 경찰, 사회사업가, 법률가, 보건의료인, 관련 공무원 등)의 양성과 교육, 실습, 재교육 과정에 청소년인권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함.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관련 국가기관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지도자 교육 커리큘럼 및 평가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함. 셋째, 청소년관련 지도자 집단에 대한 업무 평가, 승진 심사 등을 판단하는 자료에 청소년인권 관련 교육 이수 여부 포함
-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사회과, 도덕과, 윤리과 등 인권과 밀접히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상담실 등의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방학 중에 희망하는 지도자가 연수를 받도록 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교육과정 중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단원에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지도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함.

- 인권교육 시범 연수기관 지정·운영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및 전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시설 중에서 지자체별로 1개소를 인권교육 시범 연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인권센터 등에서 수행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 인권교육의 우수 기법에 대한 사례발표, 인권교육 우수 지도자에 대한 시상 등을 실시함.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청소년인권 전문연수 및 연수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6) 청소년인권 법·제도의 개선

현황 및 필요성

- 선진 외국의 경우에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청소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의 개선을 실시해 왔음.
- 선진 국가일수록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과 도구로 활용하고 모든 법과 정책·제도를 협약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법·제도 정비는 불충분함.
-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시민적 자유와 권리, 자녀양육 등 국내법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추진 방향

- 한국청소년인권선언 제정, 가칭 ‘청소년인권특별법’ 제정, 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한 청소년관계법 정비, 현행법상 청소년인권 침해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

해 청소년 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조성

-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청소년인권정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청소년 인권 업무를 전담할 담당 부서 설치

핵심추진과제

- ① 한국청소년권리선언 제정
- ② 가칭 ‘청소년인권특별법’ 제정
- ③ 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한 청소년관계법 정비
- ④ 현행법상 청소년인권 침해규정의 제·개정
- 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⑥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인권 전담 부서의 설치

- ① 한국청소년권리선언 제정
 - 청소년들이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 청소년 생활 전반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성인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인권선언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한국청소년인권선언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청소년권리선언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다양한 연령,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선언의 기초를 합의하는 일이 필요함.
 - 청소년현장과 연계하여 선언 제정 여부를 검토함.
- ② 가칭 ‘청소년인권특별법’ 제정
 - 현행법은 청소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서 청소년인권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 청소년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칭 ‘청소년인권특별법’에서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세부 규정을 두는 한편, 국내 모든 법에 청소년을 포함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선언하는 규정도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국내법의 대부분은 외국인 등 소수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가칭 ‘청소년인권특별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상 설정에 외국인 자녀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함.

③ 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한 청소년관계법 정비

- 청소년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인 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자’ 이나, 국내법에서 청소년인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대상 연령은 아동복지법의 경우만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18세 미만자’ 이고, 다른 법률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도 청소년으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연령도 다소 차이가 있음.
-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연나이 19세 미만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용어와 연령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
- 청소년의 상한연령이 18세 이상인 것은 인권과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하한연령이 아동권리협약과 달리 9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하한연령의 제한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향후로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④ 현행법상 청소년인권 침해규정의 제·개정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3개 조항을 유보했는데,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차에 걸친 권고의견에서 유보조항의 철회와 함께 국내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음.
- 민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모든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여성과 남성의 혼인 가능연령을 18세로 일치시키며,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동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둬.
-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의 견해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차별이 금지되도록 관련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함.

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지역사회의 환경과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
- 청소년·민·관 등 지역사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조례 제정 후 청소년관련 지도자 중에서 인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학교, 활동시설 등을 이용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함.
-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후에는 청소년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조례에 대한 홍보캠페인과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함.

⑥ 지방자치단체 내 청소년인권 전담 부서의 설치

- 아동권리협약 등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청소년인권정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청소년인권 업무를 전담할 담당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내 청소년인권 전담 부서는 지역사회에 청소년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의 홍보와 자치센터를 활용한 인권교육 기회 제공, 지역사회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 지원,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지도·점검,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중앙부처의 청소년인권정책이 지역사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권업무를 수행함.

부록 :

청소년인권정책 실현을 위한 로드맵(2006~2010)

청소년인권정책 실현을 위한 로드맵(2006-2010)

◆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

추진과제	2006	2007	2008	2009	2010
청소년 정책사업 시 청소년 인권 영향평가 의무화	· 전문가 평가 · 영향평가지표 개발	· 시범영향평가(청소년 위원회사업중심) · 법적근거마련연구	· 법적근거마련(법 률 제·개정)	· 영향평가(전 부처 확대)	운영
청소년인권 관련 부처 간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강화	· 청소년정책 관계기 관 · 협의회에 의제 상정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상설기구 설치 및 모니터링	· 상설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 확보	· 청소년인권모니 터링 상설기구 설치	운영	운영	운영
인권지표 개발 및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인권실태조사(1차) · 청소년인권지표개발I	· 청소년인권 지표 개발II	-	-	· 인권실태조사 (2차)
청소년위원회 내 인권정책 담당부서의 설치 및 조정	· 독자적인 부서로 설치근거 마련	· 독자적인 부서 설치·운영	· 독자적인 부서 설치·운영	· 독자적인 부서 설치·운영	· 독자적인 부서 설치·운영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평가대회 개최	· 평가준비	· 평가대회개최	· 평가대회개최	· 평가대회개최	· 평가대회개최

◆ 청소년인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추진과제	2006	2007	2008	2009	2010
청소년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인권에 관한 개괄 설명서 개발	· 청소년지도자용 인권교육자료 개발 I	· 청소년지도자용 인권교육자료 개발 II	· 각종 시청각 자료 개발 I	· 각종 시청각 자료 개발 II
청소년인권 체험교실 등 인권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 인권체험활동프로그램 시범 공모	· 인권체험활동프로그램 공모 지원 · 인권체험교실운영	· 인권체험활동프로그램 공모 지원 · 인권체험교실운영	· 인권체험활동프로그램 공모 지원 · 인권체험교실운영	· 인권체험활동프로그램 공모 지원 · 인권체험교실운영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정책의 대국민홍보 및 교육	· TV홍보(공익광고, 기업 이미지 광고 활용)	· TV홍보 · 청소년용 아동권리협약자료 제작·배포	· TV홍보	· TV홍보	· TV홍보
청소년 인권백서 발간 및 보급	· 인권백서 기초자료 개발	· 백서발간	· 백서발간	· 백서발간	· 백서발간
청소년 인권신장 모범 및 침해사례집	· 사례집 준비	· 사례집 발간	· 사례집 발간	· 사례집 발간	· 사례집 발간
청소년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인권백일장, 그림 그리기대회 · 인권국제학술회의 · 인터넷과 모바일 연계 인권캠페인	· 인권백일장, 그림 그리기대회 · 청소년인권국제영화제	· 인권백일장, 그림 그리기대회 · 청소년권리 신문 및 잡지 발간 · 인권국제학술회의 · 청소년인권국제영화제	· 인권백일장, 그림 그리기대회 · 청소년인권국제영화제	· 인권백일장, 그림 그리기대회 · 인권국제학술회의 · 청소년인권국제영화제

◆ 청소년의 자발적인 인권참여활동 지원

추진 과제	2006	2007	2008	2009	2010
청소년의 자발적인 인권참여활동 지원	· 연구 및 시범활동 · 옴부즈탄 운영(모니터링 및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지역활동 활성화	· 지역활동 활성화	· 지역활동 활성화	· 지역활동 활성화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제도 도입	·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임명	·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임명	·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임명	·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임명	· 청소년인권 홍보대사 임명
청소년이 만드는 인권보고서 및 아동권리협약 제작 배포	-	· 청소년이 쓴 인권 보고서제작·지원 · 청소년에게 필요한 아동권리협약 공모전	· 청소년이 쓴 인권 보고서제작·지원 · 청소년에게 필요한 아동권리협약 공모전	· 청소년이 쓴 인권 보고서제작·지원 · 청소년에게 필요한 아동권리협약 공모전	· 청소년이 쓴 인권 보고서제작·지원 · 청소년에게 필요한 아동권리협약 공모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권익보호활동 지원	· 청소년 인권 신문고(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스템구축) · 상임 인권침해 전문자문위원 선임	· 청소년인권센터와 연계 운영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지원 그룹 조직I	·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지원 그룹 조직II	· 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 유엔청소년포럼,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 협력관계 조성	· 국제회의의참여지원	· 국제회의의참여지원	· 국제회의의참여지원	· 국제회의의참여지원

◆ 인권 사각 지대의 청소년 지원 및 환경 개선

추진 과제	2006	2007	2008	2009	2010
미진학, 근로청소년 지원 및 환경개선	· 요구조사	· 아르바이트 개발· 지원	· 아르바이트 개발· 지원	· 아르바이트 개발· 지원	· 아르바이트 개발· 지원
가출 및 비행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실시
탈북청소년 지원 및 환경개선	· 실태파악	· 사업개발	· 지원 실시	· 지원 실시	· 지원 실시
외국인 이주자 자녀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환경개선	· 실태조사 및 연구	· 법제정	· 대국민캠페인 실시	· 대국민캠페인 실시	· 대국민캠페인 실시
장애청소년 문제 감사위원회 설치	· 장애청소년 문제조사 I	· 장애청소년 문제조사 II	-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 운영
여성청소년 인권전담 민간단체 설치·운영	· 준비	· 시행	· 시행	· 시행	· 시행

◆ 청소년인권 단체 및 지도자 지원

추진 과제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앙단위에 청소년인권 정보센터 운영	· 설치 준비 I	· 설치 준비 II	· 설치 및 사업시작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지방청소년인권센터 설치	· 설치 기준 마련	· 지방청소년인권센 터 지원	· 지방청소년인권센 터 지원	· 지방청소년인권센 터 지원	· 지방청소년인권센 터 지원
청소년인권활동 사례 발표대회 개최	· 준비	· 사례발표대회 개최	· 사례발표대회 개최	· 사례발표대회 개최	· 사례발표대회 개최
청소년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성	· 인력풀 구성	· 관련 연구 및 전문 가 과정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사 전 문연수에 포함) · 인력풀 구성	· 법·제도 개선 · 인력풀 구성	· 인력풀 구성	· 인력풀 구성
청소년인권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 기초연구, 사례분 석 및 시범적용	·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네트워크 구축강화	· 네트워크 활성화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제도화 및 시스템 구축	· 전문연수과정 시범 운영	· 연수과정 개발	· 연수과정 운영	· 연수과정 운영	· 연수과정 운영

◆ 청소년인권 법·제도 개선

추진과제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청소년권리선언 제정	· 청소년헌장과 연계하여 검토	· 한국청소년권리선언 제정	-	-	-
가칭 '청소년인권특별법' 제정	· 청소년관계법 정비와 연계하여 검토	· 지속적인 관계법 정비	· 지속적인 관계법 정비	-	-
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청소년관계법 정비	· 검토	· 개정	· 개정	-	-
현행법상 청소년 침해규정의 제·개정	· 관계기관 협의	· 제·개정 추진	· 제·개정 추진	-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권고	· 시행	· 시행	· 시행	· 시행
청소년인권 전담부서 설치	· 권고	· 시행	· 시행	· 시행	· 시행